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

CJ CGV

(주관부서 : 컴플라이언스파트)

《 목 차 》

〈 제 1 장 총칙 〉

- 제 1 조(목적)
- 제 2 조(적용범위)
- 제 3 조(용어의 정의)
- 제 4 조(조직구조)

〈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〉

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

- 제 5 조(선임)
- 제 6 조(역할)

제 2 절 준법경영위원회

- 제 7 조(구성)
- 제 8 조(역할)
- 제 9 조(운영방법)

제 3 절 코디네이터 및 준법경영실무위원회

- 제 10 조(구성)
- 제 11 조(역할)
- 제 12 조(운영방법)

제 4 절 임직원

- 제 13 조(의무)

〈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〉

- 제 14 조(자율준수의지의 천명)
- 제 15 조(자율준수가이드)
- 제 16 조(모니터링제도)
- 제 17 조(교육프로그램의 실시)
- 제 18 조(제재 및 포상)
- 제 19 조(문서관리)
- 제 20 조(경쟁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)
- 제 21 조(세부지침에 대한 위임)

[부칙] 제 1 조(시행시기) (2018.7.16. 제정)

[부칙] 제 1 조(시행시기)(2018.10.23. 개정)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

[시행 2018.10.23.] 일부개정]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(이하 “본 규정”)은 준법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씨제이씨지브이(주)(이하 “회사”)의 모든 임직원들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률(이하 “경쟁법”)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.
2. “준법경영”은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법 및 회사 내규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경쟁당국”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.
4. 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”은 준법경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 및 행동규범 등을 말한다.

제4조(조직구조)

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컴플라이언스파트를 두고, 다음 각 호의 조직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.

1. 자율준수관리자 :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관리자
2. 준법경영위원회 : 준법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
3. 코디네이터 : 각 부서별 준법경영 일상 점검하여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

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제1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5조(선임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 결원 시 그 후임자 선임까지 컴플라이언스파트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역할)

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총괄
2. 경쟁당국 및 규제기관의 협조 및 지원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절 준법경영위원회

제7조(구성)

- ① 준법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. (개정 2018.10.23.)
 1. 위원장
 2. 부위원장
 3. 자율준수관리자
 4. 위원
 5.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
- ② 준법경영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대표이사가 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, 자율준수관리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8.10.23.)
- ③ 부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하며, 위원은 전략지원담당, 국내사업본부장, 경영관리담당, 인사담당, 경영진단팀장, 법무팀장으로 구성한다. 조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시 해당 조직장으로 당연 선임된다. (개정 2018.10.23.)
-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컴플라이언스파트장이 담당한다.

제8조(역할)

준법경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방침 설정

2. 준법경영 추진 계획 및 방침 사항 결정
3. 준법경영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운영방법)

- ① 준법경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.
-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준법경영위원회 구성원은 임시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3일전(영업일 기준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절 코디네이터 및 준법경영실무위원회

제10조(구성)

- ① 회사는 각 조직(담당/본부/팀)마다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, 코디네이터의 지정 범위 및 구성인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기로 한다.
-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서 지정된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준법경영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)를 둔다.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실무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컴플라이언스파트원이 담당한다.

제11조(역할)

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준법경영 가이드라인, 업무 매뉴얼 등 각종 지침 전파 및 홍보
2. 각 부서별 준법경영 일상 점검 파악 후 컴플라이언스파트에 공유
3. 준법경영 관련 이슈 발생 시 컴플라이언스파트와 협업 수행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(운영방법)

- ① 실무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.
-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준법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임시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사항을 각 코디네이터에게 회의 개최 3일전(영업일

기준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절 임직원

제13조(의무)

-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, 회사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파트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.
- ④ 모든 임직원은 법률위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⑤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컴플라이언스파트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

제14조(자율준수의지의 천명)

-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의지를 천명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배포한다.

제15조(자율준수가이드)

- ① 컴플라이언스파트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가이드는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가이드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모니터링 제도)

컴플라이언스파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, 연 1회 이상 준법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상시 점검, 조사

2.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
3. 각 부서별 관련 현안에 대한 신고서, 보고서, 각종 자료의 검토

제17조(교육프로그램의 실시)

- ① 컴플라이언스파트는 회사 내부에 준법경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.
- ② 전향의 교육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다.

제18조(제재 및 포상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징계권자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준수실태 점검결과가 우수하거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19조(문서관리)

준법경영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효율적, 체계적으로 작성·보관되어야 한다.

제20조(경쟁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)

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세부지침에 대한 위임)

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,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시기)

본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.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이력

2018년 10월 23일 1차 개정